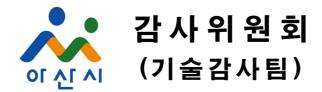
可型の私上



[2021년도 상반기]

대규모건설공사 추진실태 점검 결과



[2021년도 상반기]

대규모건설공사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

I 감사개요

1. 추진 배경

가. 아산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공사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서 부실시공 가능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

2. 감사 종류: 특정감사

3. 감사 대상

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도급+관급)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총 37건)

나. 2억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총 30건)

4. 감사기간 및 감사반

가. 감사기간: 2021. 4. 19. ~ 2021. 5. 21.

나. 감 사 반: 기술감사팀

5. 감사내용

- 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품질관리 실태 및 점검 등
- 나. 설계변경(실정보고)에 따른 절차 및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
- 다.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실태점검 및 공사 관련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
- 라.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 마.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
- 바. 건설사업관리 배치 현장의 업무수행지침 준수 여부 등

6. 주요 지적 사항

- 가. 준공검사 시 감사분야 공무원 미입회
- 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 다. 건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7. 현장점검 지적 사항

- 가.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부적정
- 나. 공정관리 소홀
- 다.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부적정

Ⅱ 감사결과

1. 총평

가. 공공건축, 도시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됨.

2. 지적사항 총괄표

합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회수	문책
건수	금액(원)	인원	(건)	(건)	(건)	(건)	(건)	(원)	(명)
3	_	미기재	-	3	_	_	_	_	미기재

3. 처분 사항

구분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_{천원}) 조치 금 액		신분상	비고
		계	3	계	_	미기재	
		시정	_	회수	_		
계	3	주의	3	징수	_		
	3	개선	_	추징	_		
		권고	_	반환	_		
		통보	_	기타	_		
1	준공검사 시 감사분야 공무원 미입회	주9	의				
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주의				
3	건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주의				

4. 지적사항

가. 준공검사 시 감사분야 공무원 미입회

■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제11조(계약심사 사후관리)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 대상 공사인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감사부서에 입회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확인받아야 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건설 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도급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11절 1. 가목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나목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받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 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함.

다. 건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제2절(계약심사대상사업)
1. 가목 1)의 라)에 따르면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선 시・도(이하 "충청남도")에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으로 규정하여 계약
심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라. 현지조치 지적 사항

- 1) ◎ ○ ○ 지구 ○ ○ ○ ○ ○ 시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외부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시 의뢰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사진대지를 외부시험의뢰서에 첨부하고, 외부품질시험기관에서 시료 수령 시 봉인 상태에 대한 사진대지를 시험성적서에 첨부하여 서로 동일한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시험의뢰서와 외부품질시험성적서 상 에 동인한 봉인된 시료 사진대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이를 누락함.

2) ♦♦♦♦♦♦ 센터 건립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A형(이동식) 사다리는

「안전보건규칙」 제24조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로 정해져 있어,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고용노동부, 2019. 3. 18.)」 에 따라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소홀히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로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부진한 공정에 대한 대책보고를하지 않았으며, 자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관리를 소홀히 함.

3) 아산시 ◆◆◆◆◆ 조성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외부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시 의뢰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사진대지를 외부시험의뢰서에 첨부하고, 외부품질시험기관에서 시료 수령 시 봉인 상태에 대한 사진대지를 시험성적서에 첨부하여 서로 동일한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시험의뢰서와 외부품질시험성적서 상 에 동인한 봉인된 시료 사진대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이를 누락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에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변경된 공정에 대한 보고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외부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시 의뢰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사진대지를 외부시험의뢰서에 첨부하고, 외부품질시험기관에서 시료 수령 시 봉인 상태에 대한 사진대지를 시험성적서에 첨부하여 서로 동일한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시험의뢰서와 외부품질시험성적서 상 에 동인한 봉인된 시료 사진대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이를 누락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에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공정대비 10%이상 공정이 부진하나 부진공정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지 않음.

6) ▲▲ ▲▲(▲▲▲▲) ▲▲▲▲ 신축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공정대비 10%이상 공정이 부진하나 부진공정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20㎡이상의 품질시험실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

7) 아산시 ∇ 신축공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A형(이동식)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로 정해져 있어,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고용노동부, 2019. 3. 18.)」 에 따라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건설현장 작업용으로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는 등 현장관리를 소홀히 함.

8) 🗏 🖺 🗒 🗒 🗒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공정대비 10%이상 공정이 부진하나부진공정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에게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결과 품질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며, 이에따라 20㎡이상의 품질시험실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를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외부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시 의뢰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사진대지를 외부시험의뢰서에 첨부하고, 외부품질시험기관에서 시료 수령 시 봉인 상태에 대한 사진대지를 시험성적서에 첨부하여 서로 동일한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시험의뢰서와 외부품질시험성적서 상 에 동인한 봉인된 시료 사진대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이를 누락함.